

★ 5월 31일(목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보도자료 2012. 5. 31(목)		교육과학기술부 Ministry of Education, Science and Technology
홍보담당관실 ☎ 2100-6580		

<자료문의> ☎ 02-2100-6923, 대학선진화과장 김재금, 사무관 최하영

평가인증을 통한 국제적인 건축학교육 인재양성의 기틀 마련

-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을 건축학과 평가·인증을 위한 인정기관으로 지정, 개정 건축사법('12.5.31 시행)에 의해 인정받은 기관이 인증한 건축학 대학(원) 과정을 이수해야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 가능 -

- 교육과학기술부(장관 이주호)는 건축학교육 전문학위 프로그램 교육의 질을 인증해 주는 역할을 담당할 평가·인증 인정기관으로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(이사장 이영희)을 지정했다고 밝혔다.
-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은 2010년 11월 인정기관 지정을 신청하여 올해 5월 중순까지 1년 6개월에 걸쳐 평가·인증의 합목적성, 인프라, 기준 및 방법, 실적의 활용 측면에서 인정기관심의위원회(위원장 이준승,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)의 심사를 거쳤으며,
- 위원회의 보완요구 사항에 대한 개선이 완료됨에 따라 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최종 확인하여 인정기관으로 지정('12.5.31)한 것이다.
- 민간 프로그램 평가·인증기관에 대한 정부 인정기관 지정제도(고등교육법 제11조의2)는 고등교육의 자율적인 질 관리 및 책무성 강화 요구에 따라 2008년에 도입된 것으로,
- 인정기관은 대학이 스스로 작성한 자체보고서를 토대로 평가를 실시하여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이 국제적인 건축사 양성 요구 수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게 된다.

- 정부는 민간 기관에 대한 인정심사를 통해 평가·인증 기준 및 절차를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림으로써 고등교육의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, 평가·인증 기관에 대한 책무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.
- 기존 10개*의 민간 프로그램 평가·인증기관 중 5개 기관은 인정 기관 지정 심사가 진행 중이며, 지난해 11월 한국간호평가원이 처음으로 프로그램 평가·인증 인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바 있다.

* 간호평가원, 공학교육인증원, 건축학교육인증원, 경영학교육인증원, 의학교육인증원 (이상 인정기관 지정심사 신청), 무역교육인증원, 수의학교육인증원, 약학교육인증원, 치의학교육인증원, 한의학교육인증원

□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은 2005년 설립 이후 대학의 신청을 받아 자율적으로 평가·인증을 실시해 왔으며 2008년에는 캔버라 어코드(Canberra Accord)* 정회원 자격을 취득하는 등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은 기구이다.

* 건축학교육 국제협약체로 회원국 졸업생은 모든 회원국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음을 상호 인정

- 금번 인정기관 지정을 통해서도 국내적인 권위를 부여받음으로써 향후 국제사회에서 학위 및 자격의 상호인정 움직임을 선도해 갈 수 있는 기반을 한층 더 공고히 하는 계기가 마련되었고,
- 특히, 인정기관 지정 심사를 통하여 국제적 호환성을 고려하면서 한국 현실을 고려한 평가인증 기준 수립, 성과중심의 평가인증 체제 확립을 위한 관련규정 정비, 대학의 부담경감 방안 마련 등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22개 보완요구사항에 대한 개선작업을 통해 평가·인증 역량이 한층 더 강화되는 성과가 있었다.

□ 오늘부터 시행 예정인 개정 건축사법('11.4.29)*은 교과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 인증한 건축학 학위과정이 개설된 대학·대학원에서 일정학기 이상 이수해야 실무수련을 통해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,

- 동 인증원은 **2017년까지 참여의지가 있는 모든 건축학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·인증 실시를 목표로 본격적인 인증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.**

건축사 시험 응시자격 제한	□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 인증한 5년제 대학 또는 대학원의 건축학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간 실무수련을 받아야 함
실무수련 특례조항	□ 개정 건축사법 시행 전에 「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」이 인증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도 3년의 실무수련을 받으면 되며, - 인증 받지 못한 5년제 건축학 대학 또는 대학원을 이수한 경우라 하더라도 2023년까지 건축사사무소에서 4년간 실무수련 받으면 자격시험에 응시 가능
경과규정	□ 기존의 4년제 대학과 일반 대학원 과정 등을 이수한 사람은 2019년까지 종전 건축사법에 의해 예비시험을 합격하면 2023년까지 자격시험 응시 가능

-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은 향후 **5년간(2012.5.31 ~ 2017.5.30) 인정기관으로 활동하게 되며, 5년 후에는 재인정 심사를 받게 된다.**

- 인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에는 인정기준을 일관되게 준수하고 있는지와 제출한 실행계획을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받게 되며, 이를 위해 인정기관심의위원회 산하에 별도의 지도감독위원회가 설치·운영된다.

※ <첨부>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프로그램 평가·인증 인정기관 정부지정 공고문

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12-301호

고등교육 프로그램 평가·인증 인정기관 정부지정 공고

「고등교육기관의 평가·인증 등에 관한 규정」 제6조제2항에 따라
고등교육 프로그램 평가·인증 인정기관 지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12년 5월 31일

교육과학기술부 장관

- 기관명 :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
- 사업자등록번호(법인등록번호) : 108-82-061**
- 대표자 : 이영희
- 주소 :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1044-34 건축회관 5층
- 평가·인증의 종류 : 고등교육 프로그램 평가·인증
- 평가·인증 주기 : 5년
- 지정의 유효기간 : 2012. 5. 31. ~ 2017. 5. 30.

※ 프로그램 평가·인증 기준, 방법, 절차 등은 인정기관(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)이 별도 공고